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48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차규근・김재원・정춘생

황운하 • 신장식 • 김선민

김준형 • 강경숙 • 서왕진

이해민 · 김종민 · 백선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인 유튜버, 영상크리에이터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미디어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분배받는 광고수익, PPL 광고수익 및 시청자가 지불하는 후원금, 지원금, 회원비, 활동비 등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최근 새로이 급증한 신종 업종으로서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해당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소득신고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특히,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미디어콘텐츠에 본인의 은행계좌를 명시하고, 이를 통하여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 해당 행위로 벌어들인 수입 역시 소득세과세대상이나 이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미디어콘텐츠창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광고 수입은 물론, 후

원금·지원금·회원비·활동비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시청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미디어콘텐츠에 계좌를 공개하여 후원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계좌를 신고하고, 신고된 계좌만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과세제도를 명확히 알리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160조의6 신설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미디어콘텐츠와 관련하여 얻는 광고수익 및 구독료·회원비·후원금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시청자로부터 받는 금전을 포함한다)

제80조제2항제5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160조의6에 따라 신고된 공개계좌를 사용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1조의15(공개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160조 의6에 따라 신고된 공개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청자로부터 금 전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 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1. 신고하지 아니한 계좌를 사용하여 금전을 취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과세기간 분의 미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1천분의 5

- 2. 공개계좌를 신고하였으나 다른 계좌를 사용하여 금전을 취득한 경우: 공개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③ 제1항의 가산세 계산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0조의6(미디어콘텐츠창작자의 공개계좌 신고·사용의무) ① 제19 조제1항제10호의2에 해당하는 미디어콘텐츠창작 사업자가 계좌를 공개하여 시청자로부터 금전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한 계좌(이하 "공개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된 공개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청자로부터 금전을 취득하는 미디어콘텐츠창작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③ 공개계좌의 개설・신고・변경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0조의6제2항에 따른 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 대한 명령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미디어콘텐츠창작 사업자의 공개계좌 신고·사용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디어콘텐츠와 관련하여 계좌를 공개하여 시청자로부터 금전을 취득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0조의6에 따른 공개계좌 신고·사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공개계좌 신고·사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0조의6에 따른 공 개계좌 신고·사용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다.
- 제5조(미디어콘텐츠창작 사업자의 공개계좌 신고·사용의무에 관한 특례) 제160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미디어콘텐츠와 관련하여 시청자로부터 금전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개계 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제19조(사업소득) 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10의2.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서
	<u>발생하는 소득(미디어콘텐츠</u>
	와 관련하여 얻는 광고수익
	및 구독료・회원비・후원금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시청
	자로부터 받는 금전을 포함한
	<u>다)</u>
11. ~ 21. (생 략)	11. ~ 2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생 략)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2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	
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	

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 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 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 1. ~ 4. (생략)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 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나. (생 략) <신 설>

다. ~ 바. (생 략)

③·④ (생 략) <신 설>

1. ~ 4. (현행과 같음)
5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160조의6에 따라 신고
된 공개계좌를 사용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라. ~ 사. (현행 다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81조의15(공개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160조의6에 따라 신고된 공
개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청자로부터 금전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1. 신고하지 아니한 계좌를 사용하여 금전을 취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과세기간 분의 미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1천분의 5
- 2. 공개계좌를 신고하였으나 다 른 계좌를 사용하여 금전을 취득한 경우: 공개계좌를 사 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 의 5
-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 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도 적용한다.
- ③ 제1항의 가산세 계산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6(미디어콘텐츠창작자의 공개계좌 신고·사용의무)
① 제19조제1항제10호의2에 해당하는 미디어콘텐츠창작 사업자가 계좌를 공개하여 시청자로부터 금전을 취득하려는 경

<신 설>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신 설>

1. ~ 3. (생략)

<u>우</u> 에는	: 관할	세년	무서장에?	게 신
고한	계좌(이	하	"공개계	좌"라
하다)	를 사용	하여	야 한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된 공 개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청자로부터 금전을 취득하는 미디어콘텐츠창작 사업자에 대 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③ 공개계좌의 개설·신고·변 경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7조(명	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u>제4호</u>			

- 1. 제160조의6제2항에 따른 미

 디어콘텐츠창작자에 대한 명

 령
-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